#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79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 강득구·김병주·박홍배

송재봉 • 윤후덕 • 이강일

이기헌 • 이용우 • 이학영

정혜경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임시로 입소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범죄의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가해 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가 「주택임대 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 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 죄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도록 돕고 사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법률 제 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의2 주거지원금의 지급

- 제32조의2(주거지원금의 지급요건)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가족이 「주택임대 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 범죄행위가 발생한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이하"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같은 법 제40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아동학대행위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같은 법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 킹범죄의 피해자로서 스토킹행위자가 같은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따른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제1항 각 호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당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 2. 해당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협의한 경우
- 3. 피해자 또는 그 동거가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 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국가는 지급한 주거지원금의 범위에서 해당 주거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 ④ 주거지원금의 지급은 보호시설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32조의3(주거지원금의 금액) 주거지원금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한다. 다만,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해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한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제32조의4(주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주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 2.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 제32조의5(구조금 지급규정의 준용) 주거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금"은 "주거지원금"으로,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해당하는 범죄"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장의2 주거지원금의 지급
<u>&lt;신 설&gt;</u>	제32조의2(주거지원금의 지급요
	건)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가
	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 범죄행위
	가 발생한 주택(이하 "해당주
	택"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이
	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로서 아동학대행위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의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같은
  법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스토킹행위자가 같은 법 제9 조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 1. 제1항 각 호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당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상대

   방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 2. 해당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협의한 경우
- 3. 피해자 또는 그 동거가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지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 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국가는 지급한 주거지원금 의 범위에서 해당 주거지원금 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다.
- ④ 주거지원금의 지급은 보호 시설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 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32조의3(주거지원금의 금액) 주 거지원금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

<신 설>

<신 설>

차계약에서 약정한 월차임의 3 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 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한다. 다만,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 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해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 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 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율을 더한 비율

제32조의4(주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주거지원 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주거지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신 설>

2.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제32조의5(구조금 지급규정의 준용) 주거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구조금"은 "주거지원금"으로,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해당하는 범죄"로 본다.